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정	2012. 9. 4	국토해양부훈령	제 879호
개정	2013. 4. 15	국토교통부훈령	제 59호
개정	2014. 3. 19	국토교통부훈령	제 347호
개정	2014. 7. 28	국토교통부훈령	제 407호
개정	2015. 9. 12	국토교통부훈령	제 589호
개정	2018.12. 7	국토교통부훈령	제1114호
개정	2023.7. 11	국토교통부훈령	제16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에 관하여 철도안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예방활동과 사고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시정조치”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이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기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
가. “시정명령”이란 철도안전법령 및 이에 따른 각종 지시, 절차 등

에 위배되는 경우

나. “개선권고”란 법령 등 위반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에 대해 단기간 시정이 가능한 경우

3. “상시점검”이란 제6조의 감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또는 월별 점검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특별점검”이란 상시점검 외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발생시 사고등의 원인 확인, 안전 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

가. 기획점검 : 상시점검시 안전위해 요인 발견, 철도사고·운행장애 원인 파악, 기타 안전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점검

나. 정기점검 : 명절 등 대수송기간, 올림픽 등 국가행사, 계절적 요인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안전 위해요인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점검

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제4조(감독관의 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을 임명할 때에는 별표 2의 업무분야별로 임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감독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감독관의 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최초 임명 또는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운전교육훈련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제6조(감독대상기관 등) ① 감독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
3. 철도안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
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② 삭제

제7조(감독관 업무) ① 감독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승인결과 확인
2.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유지여부 확인 및 정기·수시 검사 결과 확인
3. 철도안전법 제24조의 안전교육 시행여부 및 적절성 확인
4.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술기준에 맞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지 확인
5. 철도안전법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확인·점검
6. 철도안전법 제38조 등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 등
7. 철도안전법 제38조의 2와 제38조의 3에 따라 개조차량의 경우 개조 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개조되었는지 등 확인·점검
8. 철도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 여부 확인
9.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 확인
10. 철도사고 등 발생시 철도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현장조치 적절성 여부 검토 및 사고현장 출동 후 사고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안전조치 활동
11. 철도안전법 제7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확인·점검
12. 그 밖의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 감독관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점검업무를 추진하고, 각 분야별 담당 업무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고 현장 감독관의 지휘
2. 사고 조사·복구·수습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사후 보고서 작성

제8조(상시점검) ① 상시점검은 감독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정 수행 여부를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상시점검의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특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은 기획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기획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점검 결과 안전위해 요인이 발견되어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철도사고·운영 장애가 발생하거나,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여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훈련의 적정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감독대상기관의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명절 및 휴가철 등 대규모 이동수요 발생이 예상되어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폭염 및 폭설, 해빙기 등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정기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9조의1 삭제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 삭제

제10조(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항목
3. 점검기간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점검계획에는 상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 점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감독관별 점검일정을 포함한 월별점검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립하여 매월 末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월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관별 감독기관
2. 감독 항목
3. 감독 기간 및 장소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검사계획의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특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7일전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지된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는 해당 기관에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실시) ①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간점검계획 및 월간 점검계획에 따라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점검 등은 별도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현장 사고예방활동 및 사고대응 시 감독대상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요청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3. 관계서류, 자료 및 관련 물품 등의 검사
4.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5.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제3조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감독관의 의무 등) ① 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검사 및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검사 및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검사 및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현장점검 시 별표 5와 같은 장비와 안전복장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 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처분심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 위반,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3호 서식)에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철도안전감독 활동의 종합결과를 철도안전감독 활동백서로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실적의 평가) ① 감독관의 점검결과 등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업무실적의 평가시기, 절차 등은 따로 평가규정에 정하여 평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 ① 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부 칙(2014. 7.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독관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사정 내용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대상기관은 감독관이 지적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사정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2015. 9.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행정사항)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절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8.12.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4항과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 7.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직무 교육 훈련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12)

이 훈령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독관 분야별 자격 및 경험요건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자 격
①철도안전관리분야	가급
②철도운전분야	
③철도관제분야	
④철도차량분야	
⑤철도신호분야	
⑥철도정보통신분야	나급
⑦철도전철전력분야	
⑧철도시설분야 (노반/궤도)	
⑨철도건축및기계분야 (설비분야 포함)	
⑩철도방재 및 위험물 관리 분야	
	<p>※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박사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12년 이상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p>※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박사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9년 이상 경력자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 철도 안전법에 근거한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

[별표 2]

감독관 분야별 담당업무 (제4조제2항 관련)

분야별	점 검 항 목
철도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기관총괄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관리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관리 현황 점검 ○ 철도안전관리 관련 조직 및 조직원의 운영현황 점검 ○ 철도사고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점검 ○ 그 밖에 철도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점검
철도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전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운전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운전종사자 안전관리 상태 점검 ○ 철도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를 위한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그 밖에 철도 운전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관제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관제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관제업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철도관제 시험용의 품질 및 인력 운용 현황 점검
철도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차량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차량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차량유지보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신호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신호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신호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신호 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 신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정보통신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정보통신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정보통신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정보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전철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전력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전철전력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전철전력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전철전력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전철전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시설 (노반/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시설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시설분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 설계시 안전성분석의 적정성 ○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 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 토목/궤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건축및기계분야 (설비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축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역사 등 철도 시설 및 관련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적정성 ○ 건축분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건축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이동편의시설 포함) ○ 역사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적정성 ○ 기타 철도 건축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방재 및 위험물 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시설물 소방 등 방재 및 위험물 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 수립과 이행상태 점검 ○ 시설물 방재 및 위험물 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별표 3] 삭제

[별표 4]

점검 절차 (제10조와 제11조 관련)

단 계	시간일정	주 요 업 무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매달 말 (연간점검계획은 1월 말, 월별점검계획은 25일까지 수립 후 매달말까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계획에 포함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상시점검의 방향 - 당해년도 상시점검 대상기관 - 안전점검 소요예산 ○ 상시점검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관별 점검일정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예비 자료 요청 (필요시)	본 점검 7 일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기관에 다음 자료를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 사고장애 통계 및 대책 - 철도차량 및 시설의 유지보수 현황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예비조사 (필요시)	본 점검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점검의 중점 조사사항 도출 - 기타 본 점검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점검수행	점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수검기관 통보	점검 후 국토부장관에 보고 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점검의 경우 매월점검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 후 10일까지 통보 ○ 특별점검의 경우 점검 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통보 ○ 점검결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안전 현황 -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사항 - 감독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련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를 타 철도관련 기관에 전파
이행계획서 제출	점검결과 통보 후 2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검기관은 개선사항 관계관리카드[별지 2호]를 작성 국토교통부에 제출 * 단, 철도안전법 등에서 별도로 제출기한을 명시한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치결과 모니터링	매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조치결과 추진현황 모니터링 ○ 감독관은 개인별 점검결과 추진현황(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p>(앞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안전감독관증</p> <p style="text-align: center;">증명서 번호 :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3.0cm×4.0cm)</p> <p style="text-align: center;">홍 길 동 Hong. G. D</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장관</p> </div>	<p>(뒷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안전감독관증</p> <p>성 명(Name)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p> <p>위 사람은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장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00) 0000-0000</p> </div>
--	---

55mm×85mm

비고 :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과제관리카드

관리번호*	점검명		진도율	
01-01-1805- 차량정비-1	과제명	새부 과제 입력	00% (완료 시 완료)	
	감독관			
점검대상기관		담당부서	부장	실무자
		담당		
			☎	☎
지적사항			개선사항	
<input type="checkbox"/> 지적사항 ◦ (세부내용 기재)			<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 ◦ 추진실적에 근거자료 반드시 기록 (방침문서 번호 등) ◦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	

* 관리번호 부여 : 운영기관코드-감독관 코드-연월-점검명(약)-과제번호

0000년 0월 월별점검결과보고서(감독관 000)

□ 0월 점검결과

(단위: 건)

점검명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합계

□ 0월 점검 세부 내용

유형	점검 기관	점검명(기간)	관 리 번 호*	제 목	처리현황		구분	비고
					진도율 (%)	완료 계획		
상시 점검					100	-	개선권고	완료
			01-01-1805-상시-1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70	'18.11	현지시정	
					100	-		완료
					100	-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50	'19.2		
특별 점검			01-01-1805-차량정비-1		100	-	개선권고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70	'18.11	현지시정	

					100	-		완료
					100	-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50	'19.2		

□ 전월 점검 현황(누적)

유형	점검 기관	점검명(기간)	관 리 번 호*	제 목	처리현황		구분	비고
					진도율 (%)	완료 계획		
상시 점검			01-01-1805-상시-1		100	-	개선권고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70	'18.11	현지시정	
					100	-		완료
					100	-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50	'19.2		
특별 점검			01-01-1805-차량정비-1		100	-	개선권고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70	'18.11	현지시정	
					100	-		완료
					100	-		완료
				(미완료 과제는 셀 음영처리 필요)	50	'19.2		

* 관리번호 부여 : 운영기관코드-감독관 코드-연월-점검명(약)-과제번호

미완료 과제 음영 : 미완료 과제는 해당출의 셀전부에 음영처리

진도율 : 진행에 따른 완료대비 진도율 기록

